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4월 21일 송옥주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8.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옥주의원)

현행 법령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이를 다시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을 표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일반 음식점에서 이러한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을 식자재로 사용하여도 표시의무가 없어 이를 소비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6).

이에 더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 등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완전표시제도 도입 등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그 법적 근거를 각각 두고 있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근거 법률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3. (생략)

□ 동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i)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ii)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iii)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¹⁾에 따른 축산물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축산물, iv)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²⁾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말하며,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에서는 표시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제18조³⁾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혼입되었는데, 혼입치가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②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면제 또는 예외 적용하고 있음.⁴⁾

3) 「식품위생법」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식용(食用)으로 수입·개발·생산하는 자는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가. 구분유통증명서

나. 정부증명서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 현행법령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제도 개요⁵⁾ >

구 분	내 용
유전자변형 식품 개념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의한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 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미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을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표시대상	GMO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 ⁶⁾ 된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GMO 유전자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등 * 승인품목(6종) :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표시면제 또는 예외	① GMO농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혼입된 경우(비의도적 혼입치 ^{*)} 3% 이하까지는 관련 서류 구비 시 GMO 표시 면제 * 농산물 재배·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 (대만 3% 이하, 일본 5% 이하, 호주 1% 이하, EU 0.9%이하) ②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GMO 유전자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과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식용유지류, 당류 등

□ 2025년 1월 기준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은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6개 품목의 농산물인데, 현행 유전자표시제도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표시의 예외를 두고 있어, 6개 품목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올리고당, 물엿, 옥수수 기름, 전분당, 카놀라유 등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볼 수 없는 실정임.

- 참고로, 2024년 기준 국내에 반입된 식품용·사료용 유전자변형 생물체⁶⁾는 약 1,092만 톤(30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 식품용이

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6)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을 말함.

13.4%(146.5만 톤)의 비중을 보였으며,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전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90.4%에 해당하는 987.4만 톤이 수입되었고, 대두(90.7만 톤), 면화(14만 톤)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국내 반입 유전자변형생물체 현황 >

(단위: 만 톤, 백만 불)

용도	총계		옥수수		대두		면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계	1,092.2	3,000	987.4	2,461	90.7	490	14.0	49
식품용	146.5	631	55.8	141	90.7	490	—	—
사료용	945.7	2,369	931.7	2,320	—	—	14.0	49

자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4년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식품안전을 위하여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식품등에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요구(이른바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안 발의, 국정감사, 국민청원 등을 통하여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2024년 3월 발표한 ‘2023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원료의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 국민청원 및 관련 법률안 등 발의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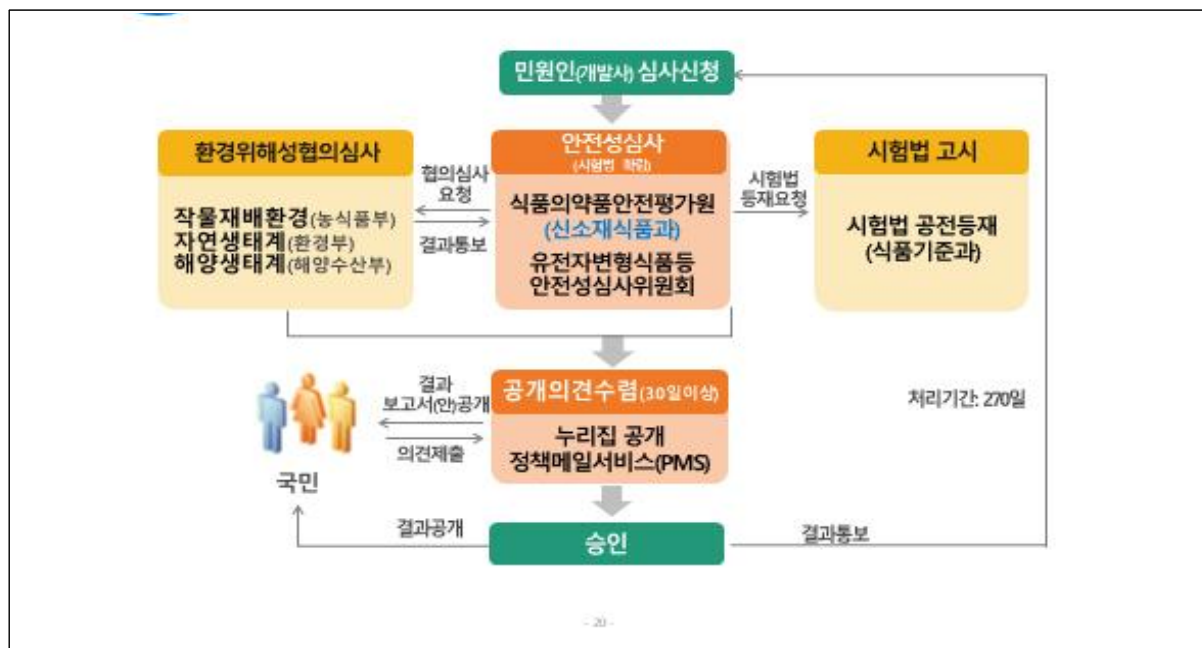
구분		발의자 등	주요 내용
식품위생법 개정안	제20대	남인순, 김현권, 윤소하, 김광수 의원안 4건	유전자변형 DNA 및 단백질의 잔류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
	제21대	김승남, 위성곤, 배진교 의원안 3건	
	제22대	임미애 의원안	유전자변형 DNA 및 단백질의 잔류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남인순 의원안	식약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 식품등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윤준병 의원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함
유전자변형 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1대	양의원영의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려는 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Non-GMO’ 등

7)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인식, 태도, 법·제도 인지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23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 관련 조사 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이며,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 남녀 800명(세종, 제주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함.

구분		발의자 등	주요 내용
			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의도적 혼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2024년 국정감사		남인순, 이개호의원	품목별 단계적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결정해서, GMO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것
2018년 국민청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7개 단체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은 제품(유지류, 당류 등)까지 GMO 표시대상 확대(완전표시제) 등 요구

□ 특히 최근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인 감자가 환경위해성협의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안전성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최종 수입승인을 받을 경우 국내 식품접객업소에서 감자튀김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임.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심사 절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을 원재료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함)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식품산업계는 현재 수입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대두, 옥수수 등)의 대부분이 식품 제조·가공용 원료로 사용⁸⁾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개선 없이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경우, 식품 제조·가공용 원료를

8)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대부분은 옥수수전분, 옥수수전분당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옥수수전분은 제과·제빵, 스낵, 어육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옥수수전분당은 음료 등에 감미료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유전자변형 대두의 대부분은 대두유(식용유)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비유전자변형 농산물로 대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식품 원가 비용을 상승시켜 국내 식품산업 발전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 등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는바, 그간 정부에서는 협의를 통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 소비자·시민·생산자 단체, 산업계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는 사회적 파급 영향이 적은 품목부터 GMO 완전표시제를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품목별 단계적 도입 방안 등을 논의 중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⁹⁾

□ 둘째, 미국, 일본은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더라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만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게 하고 있는 반면,

EU의 경우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게 하고 있는 등 각 나라의 사회적·산업적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음.¹⁰⁾

□ 셋째,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9) [참고 2]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운영 현황

10) [참고 1] 주요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현황

경우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수축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들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 검증 및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¹¹⁾

- **넷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에서 “유전자변형 농수축산식품등”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안 제12조의5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가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닌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을 원재료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사용표시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중 어떤 영업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 의무화 대상으로 규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101조제2항제1호의3에서는 제1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11)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제1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 축산물등 사용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¹²⁾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태료 금액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섯째,** 개정안은 현행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여 모든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

1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자변형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안 부칙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이 법 시행 이후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제 도입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제5조¹³⁾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을 규정하면서 제3조제1항¹⁴⁾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¹⁵⁾는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¹⁶⁾에 따

13)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4)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5)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구분하여 관리한 경우에도 그 속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함.

1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0.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게 됨.

- 예를 들어, 유전자변형을 하지 않은 대두를 원재료 함량의 50% 이상 사용하거나 원재료 함량 중 대두가 가장 많이 사용된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음. 다만,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 대두가 1%라도 혼입된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없음.

□ 즉, 현행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GMO가 0%일 때만 가능하며,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이 아닌 농수축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Non-GMO를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에 해당하게 됨.

□ 개정안은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포괄위임하고 있는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이 아닌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을 현행(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¹⁷⁾인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같이 한정할 것인지 여부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면제 대상인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EU와 미국은 Non-GMO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고 GMO가 아닌 식품에 Non-GMO를 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율임.
- 일본은 GMO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Non-GMO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비의도적 GMO의 혼입이 5% 이하인 경우는 ‘분별생산유통관리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표시만 가능하고, GMO의 혼입이 0%인 경우는 ‘GMO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Non-GMO 표시제품에는 비의도적 혼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¹⁸⁾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17) 현재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6개 품목임

18) 유병덕(2024)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이수진)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